이혼및재산분할

[부산가법 2018. 11. 7. 2018드단204974]

【판시사항】



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,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함께 살기 싫다며 '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.', '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.', '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.'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,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,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,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,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함께 살기 싫다며 '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.', '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것.', '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.'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,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,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. 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,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,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,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·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.

【참조조문】

민법 제105조, 제147조, 제839조의2, 제840조 제6호

【전문】

【원 고】원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주)

【피 고】 피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)

【변론종결】2018. 10. 24.

【주문】

1

- 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,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 중 3/4은 원고가, 1/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【이유】

】 1.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- (1) 원고와 피고는 1969. 12. 24. 혼인신고를 하였으며, 소외 1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다.
- (2)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원고의 외도,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.
- 원고는 1999. 11. 7. 피고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,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딸 소외 2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(다음부터 '이 사건 각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각서에 서명하였다.

피고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하였다.

- 1.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(주소 생략) 이전함.2. 은행 및 소외 3, 소외 4, 소외 5, 소외 6의 담보 해지건은 아빠가 해결.해지 비용은 엄마가 부담하기로 함.3.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.4.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.5. 할머니 병원비·약값 등은 일체 아빠 부담키로 함.6. 소외 7 外 교육비 일체는 엄마가 부담키로 함.7.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.
- (3) 원고는 2000. 7. 26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다음부터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- (4)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거제도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, 현재도 위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.
- (5) 원고와 피고는 2000. 2. 11.경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 병간호, 장례 등이 끝난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거제도와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였다.
- [인정 근거]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증인 소외 1의 증언, 변론의 전취지나. 판단
-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9. 11. 7.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, 원고는 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고, 현재도 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점,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 서도 원고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각서에 서명하였고,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교류 없이 생활한 점,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,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도 없다고 인정된다.
-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,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.
- 2.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
 - 가.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존부

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였으며,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약 정이었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,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).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·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,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16. 1. 25.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,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또한 이 사건 각서에는 "3.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. 7.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"으로 기재되어 있는데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,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·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나.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

갑 제3호증의 기재,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가 공동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이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이고, 그 가액은 7억 5,0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.

다.

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

- (1) 재산분할의 비율: 원고 10%, 피고 90%
- [판단 근거] 이 사건 각서는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, 원고는 각서 작성 당시 3,300만 원만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며,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,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1억 2,000만원 정도였으며, 피고가 노력하여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에 현재 7억 5,000만원으로 시세가 상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거제도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와 피고가 각서 작성 이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생활한점, 그 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, 그 형성및 유지에 대한원·피고의 기여정도, 소득재산의 발생경위,원·피고의 나이, 직업,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
- (2) 재산분할의 방법: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, 취득 경위,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,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그대로 보유하고,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.
- (3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

법제처

분할대상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 몫은 7,500만원(= 7억 5,000만 원×10%)이다

3

국가법령정보센터

-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채무 1,900만 원을 변제하고, 원고가 수령한 전세보증금 1,2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함으로써 원고에게 3,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.
- 원고가 자녀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,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딸 소외 1에게 2008. 9. 25. 500만 원, 2009. 5. 18.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을 대위변제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.
- 원고가 전세보증금 1,2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,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.

[[별 지] 목록: 생략]

판사 윤재남